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2. 4.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발의일자 : 2008년 1월 16일
- 나. 발 의 자 : 최미경 의원 외 10인
- 다. 회부일자 : 2008년 1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1월 28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최미경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장려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지원기준(안 제3조)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 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함
- 지원대상(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유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을 저하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조례제정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하며,
-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을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발의년월일 : 2008년 1월 16 일

발 의 자 : 최미경 의원외 10인

1. 제정이유

-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구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민의 출산을 격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안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12개월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함(안제4조)
- 출산장려금 신청 시기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로 함(안제5조)
-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는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함(안제6조)
-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함(안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을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다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인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송부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
	모		주민등록번호	-
신 생 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산 순위	자녀 중 제		
	분만 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번지 호			
전 화 번 호	자 택		이동전화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민 원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확 인 사 항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출생순위 :	째		
공부담당 공무원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소속)	(직급)	(성명)	서명

